

정 관

1977. 09. 26	제 정
1985. 07. 05	1차 개정
1994. 08. 24	2차 개정
1998. 12. 31	3차 개정
2000. 03. 25	4차 개정
2002. 02. 18	5차 개정
2006. 11. 13	6차 개정
2007. 05. 08	7차 개정
2010. 11. 01	8차 개정
2011. 03. 23	9차 개정
2011. 12. 29	10차 개정
2013. 03. 14	11차 개정
2016. 11. 21	1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②이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이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5.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7.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8.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10.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 사업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12. 원격교육시설 운영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연구 용역사업
3.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의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1. 1>

②이 회의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②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④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9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수 수수료 및 회비 납부
3. 이 회의 정관·제 규정·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5. 삭제 <2010. 11. 1>
6. 회원신상 변동 신고 <신설 2011. 12. 29>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별표1> 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10조(회원의 징계) ①이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11. 1>

1. 이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이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②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신설 2010. 11. 1>

③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

④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①회장은 이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회원) ①이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의회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②명예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개정 2010. 11. 1>
4. 감사 2인

-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개정 2016. 11. 21>
- ②이 회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 11. 1>
- ③이 회의 회장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 ②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 ③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9>
- ④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 협회 회장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개정 2011. 12. 29>
-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11. 1>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개정 2010. 11. 1]

- ①이 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 ②이 회의 임원이 제16조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 ③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협회를 감사하는 일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21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

②대의원은 정기총회 개최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③ 삭제 <2010. 11. 1>

제23조(총회 구성원의 수)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2.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정수에서 고정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0. 11. 1>

제24조(대의원의 선임) 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 ·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1. 1>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9.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10.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선거관리위원) [본조 삭제] [제40조의 1로 이동 <2010. 11. 1>]

제29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결권 대리행사) ①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1>

②대리인은 총회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1조(의안) ①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③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총회 의사록) ①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33조(이사회 의 구성) 이 회에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탈퇴·징계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②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5조(이사회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0. 11. 1>

제3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1>

②대리인은 이 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③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8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의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회장단회의) ①이 회의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회장단회의는 이사의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제40조(상임위원회) ①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임원, 지방협회 및 지회의 대표, 대의원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대표,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

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4. 정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5.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6.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총회에 제출

⑤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이 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9>

⑥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⑦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⑨회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1>]

제41조(전문위원회 등) ①이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다.

제5장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제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①이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각도·특별자치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1>

②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③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각 시·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시·군·구 단위 지회 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10. 11. 1>

④지방협회 회장은 해당 지방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지방협회 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 이회 회장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1>

⑤이회는 지방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의1(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감사) 이회는 3년마다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1>

제43조(산하단체) ①이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협력·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③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44조(자산의 구분)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1. 3. 23>

1. 부동산

2.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5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47조(회계의 구분 등) ①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8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예산 및 결산) ①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장 사무처

제51조(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개정 2016. 11. 21>

④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업무 및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보수·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52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3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 5. 8.>

제9장 보 칙

제55조(공고의 방법) ①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신는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는다.

③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11. 13>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3.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부 칙 <2010. 11. 1>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제3조 본 개정 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사 정원에 대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그 임기는 개정 당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 칙 <2011. 12. 29>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월 이내에 선거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 제42조제4항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6. 11. 21>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제9조 제2항 관련)

전 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 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기준

I.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II.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퍼바이저

-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IV.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V.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VI.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별지] <2013. 3. 14. 개정>

기본재산 목록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용 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204호	임대면적 496.37㎡(150.15평) <전용면적>	금오억오천백삼십칠만원정 (₩551,370,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205호	매입면적 161.17㎡(48.8평) <전용면적>	금팔억이백삼십만원정 (₩802,300,00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206호	매입면적 86.40㎡(26.13평) <전용면적>	금사억오천만원정 (₩450,000,00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선거 규정

2001. 12. 15 제 정
2007. 02. 23 1차 개정
2012. 02. 20 전문 개정
2013. 12. 02 2차 개정
2016. 02. 26 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 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에 따른 이 회 회장과 대의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 라 한다) 회장과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2016. 2. 26. 개정>

제3조(공명선거) ①선거인과 피선거인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이 규정을 지키는데 정책위주의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이 회 및 지방협회 직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제5조(선거사무협조)** ①이 회 및 지방협회는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관리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선거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을 간사로 하여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6조(구성 등)** ①선관위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 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중립의무 등)** ①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②위원장과 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③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직무와 권한)** ①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20일 전에 소집되어 선거사무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②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4. 정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5.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6. 지방협회 각종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7. 지방협회 선거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8. 제3조를 위반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9.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의견 총회 제출
10.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권

③선관위는 선거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공고
2. 입후보자의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3.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
4.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조정
5. 입후보자의 사퇴수리
6. 투, 개표의 관리 및 당선자 공고
7. 선거록 작성 보고
8.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9.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처리

제9조(위원회 선거경비) 이 회의 회장은 선관위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

제10조(입후보) ①회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후보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추천서 1부(소정양식)
3. 회비납부확인서 1부
4.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이력서 1부
7.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
8. 입후보자 각서1부

9. 기부금 입금증 1부

10. 사진 1매(여권크기)

②입후보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협회는 500만원, 지방협회는 3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등록무효)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후보등록무효로 한다.<2013. 12. 2. 개정>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을 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1항2호에 따른 추천인 수(30명 이상 50명 이하)에 미달한 때

제12조(재등록공고) ①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선관위와 이사회 회의 합동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3조(선거인명부) ①이 회의 각종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투표일 30일전까지 이 회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최근 3년간 회비납부일자, 지방협회명, 소속기관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6. 2. 26. 개정>

③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이 회의 사회복지사 전산관리 시스템에 매년마다 회비납부 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등을 대비하여 회비납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④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을 위해 선거인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3. 12. 2. 신설>

⑤선거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여부와 제공범위, 제공시기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2013. 12. 2. 신설>

⑥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중 정보(이름, 주소, 이메일)에 한 해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정보공개 동의를 전제로 한다. <2016. 2. 26. 신설>

제14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자 결정) ①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선거를 담당하는 이 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회 선관위는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선거인에 의한 정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승인으로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관리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의 인원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13. 12. 2. 개정>

1. 회원이 아닌 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이 회 및 지방협회 사무국 직원

③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이 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⑤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입후보자간 정견발표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유인물)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지방협회, 경력, 공약사항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와 수량 및 크기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전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2013. 12. 2. 신설>

③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제1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유인물 이외에는 배포할 수 없다.<2013. 12. 2. 신설>

제19조(합동토론회 등) ①입후보자는 합동토론회 및 개인연설, 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합동토론회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 장소 및 토론시간 방법 등을 결정하여 7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 12. 2. 개정>

③누구를 막론하고 합동토론회 장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④개인연설과 대담은 휴게실, 식당 등 선거권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어깨띠·피켓) <2013. 12. 2. 삭제>

제21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입후보자는 전화(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메시지 포함), 팩시밀리, 입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이 회의 회원과 선거인단에게 선거일정 등의 선거 관련 정보, 후

보자의 이력 및 공약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2013. 12. 2. 개정>

제22조(현수막) <2013. 12. 2. 삭제>

제23조(소품) <2013. 12. 2. 삭제>

제24조(부정선거 금지) 부정선거라 함은 후보자, 입후보자 운동원 등 고의적으로 본 규정을 위배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하며,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그 행위 당사자 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투표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리투표 및 허위투표 등을 하는 행위
5.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2013. 12. 2. 개정>
6.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5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선거장소, 일시, 투표방법, 투표당일 필요한 지참물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제26조(투표용지 및 투표) ①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 추천 및 투표의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2016. 2. 26. 개정>

③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27조(투표소설치 등) ①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 단위로 일정 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2013. 12. 2. 개정><2016. 2. 26. 개정>

②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사무처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16. 2. 26. 개정>

제28조(선거사무지원)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및단체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표장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투·개표장소 질서유지) ①투표장소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투·개표장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30조(투표방법) ①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투표소 및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병행하여야 한다.<2016. 2. 26. 개정>

②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허용하는 경우의 투·개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1조(참관인) ①각 후보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각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케한다.

②참관인은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자 이어야 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④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개표) ①위원장의 투표 종료 및 개표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②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33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3. 이중으로 기표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8. 기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34조(선거록 등) ①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선거록에는 선거인 총수, 투표선거인 총수,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거록에는 출석한 위원회 전원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선관위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당선 등

제35조(당선) ①회장의 당선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로 확정하며 선출직 임원의 당선은 대의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확정한다.<2016. 2. 26. 개정>

②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③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37조(보궐선거)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정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 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이의제기) ①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선거를 담당할 선관위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위반처리) ①선관위는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2. 경고
3. 시정명령
4. 입후보등록취소
5. 당선무효
6. 선거무효

②전항의 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제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당사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

제8장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구성 등) ①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방 선관위”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 6인이하로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지방협회의 운영위원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재심) 선거와 관련된 지방선관위의 판정에 불복하면, 지방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회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지방선관위가 지방협회의선거를 관리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선관위가 가지는 권한을 지방선관위가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 규정 중 그와 관련된 조항을 지방선관위에 준용한다. 다만 지방선관위는 제8조제2항에 열거된 선관위의 권한 중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제9장 대의원

제44조(대의원 자격) ①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②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대의원의 소속 지방협회가 변경된 때
2.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45조(대의원의 수) ① 이 회의 대의원의 수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250명으로 한다.

②지방협회 대의원의 수는 지방협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70인 이상 200인 이하로 한다.

제46조(대의원 임기) ①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대의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대의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대의원 권리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48조(대의원 선출방법) ①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협회는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종사분야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회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지방선관위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지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의원 선출을 공고하고, 그 선거를 관리할 수 있다.

부칙<2012. 2. 20.>

제1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회비에 한하여 이를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에도 회비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지방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모든 후보자의 동의 및 지방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에 있어 회비납부 기간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2013.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6.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선 거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명 :

2. 선거일:

3. 선거장소

4. 선거인 명부열람

가. 열람기간 : 년 월 일 09시
 년 월 일 17시(일간)

나. 열람장소 :

5. 후보자등록

가. 등록기간 : 년 월 일 09시
 년 월 일 17시

나. 구비서류 :

- ①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③ 회원증 사본 1부
- ④ 추천서 1부(이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기명날인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된 추천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 ⑤ 회비납부확인서 1부
- ⑥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⑧ 이력서 1부
- ⑨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선거명 :
2. 성 명 : (한글) (한자)
3. 주민등록번호 :
4.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5. 회원번호 :
6. 본 적 :
7. 주 소 :
8. 소속 및 직위 :
9. 학 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입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 ①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③ 회원증 사본 1부
- ④ 추천서 1부(이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기명날인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된 추천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 ⑤ 회비납부확인서 1부
- ⑥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⑧ 이력서 1부
- ⑨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등록 공고

공고 제 호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다음의 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함.

기호	성명	연령	소속	직위	사회복지경력	비고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인영등록 대장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인영을 다음과 같이 등록함.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위원장 사인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투 표 용 지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인			
	1	2	3

선 거 록

1. 선거기간

가. 공고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나. 선거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2. 투표장소 :

3. 투표개시 시각 :

4. 투표종료 시각 :

5. 투개표 결과

가. 1차 투표

1) 선거인수 : 명
2) 투표자수 : 명(%)
3) 기권자수 : 명(%)
4) 무 효 : 명(%)
5) 득표현황 : 기호 1 ○○○ 표(%)
 기호 2 ○○○ 표(%)
 기호 3 ○○○ 표(%)

나. 2차 투표

1) 선거인수 : 명
2) 투표자수 : 명(%)
3) 기권자수 : 명(%)
4) 무 효 : 명(%)
5) 득표현황 : 기호 1 ○○○ 표(%)
 기호 2 ○○○ 표(%)

6. 당선자 : 기호○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인)

부 칙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